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설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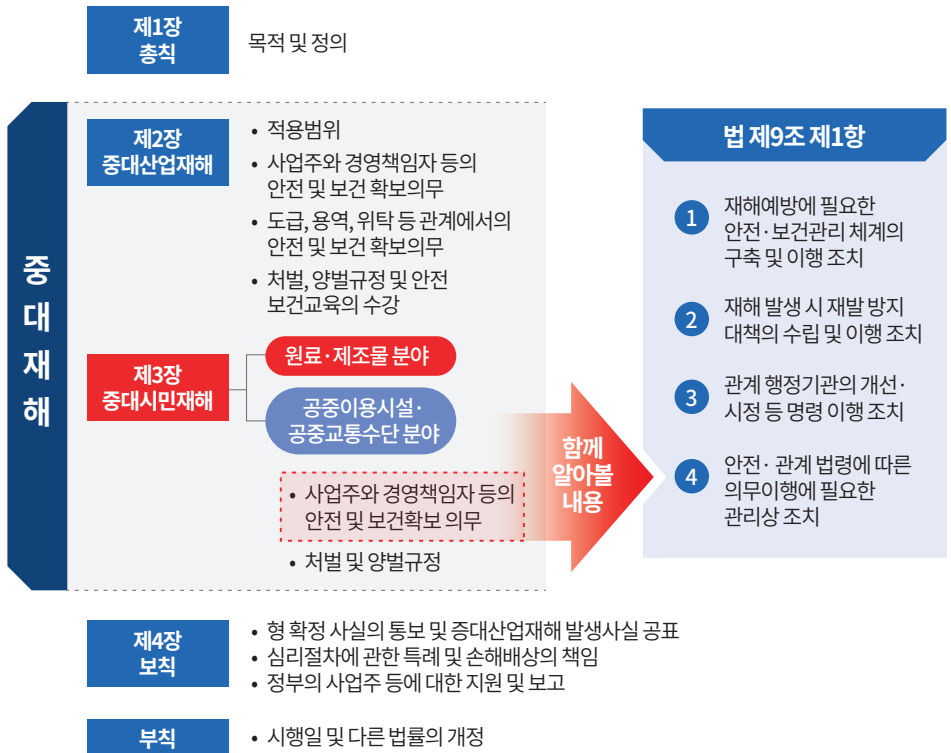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일까요?

1-1. 법의 목적

- 사업·사업장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의 처벌 등을 규정 →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법 제1조)

1-2. 법의 구조 및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법 제2조제1호)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법 제2조제2호)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제조물, 공공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법 제2조제3호)
- * 단,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제외

기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망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사고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1-3. 법의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적용대상	시행시기	관련 조항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2022. 1. 27부터 시행	법 부칙 제1조제1항 본문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	2024. 1. 27부터 시행	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

*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

본 리플릿은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분야와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수록

■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9조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음

■ 제시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장과 관련이 높은 법령은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해당

구분	법령	구분	법령
1	화학제품안전법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3	화학물질관리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6	위험물 안전관리법
7	먹는물관리법	8	농약관리법
9	약사법	1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1	화장품법	12	⋮

* 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한 것으로, 열거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률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포함될 수 있음

■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상 안전기준 등의
법정 주요 의무사항 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 제10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 등) -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9조(화학물질확인) -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의 작성·제출)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 기준 및 표시기준) -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 제품의 정보공개) -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 제49조(기록 및 보고)	- 제 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 관리물질의 신고) -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의 정보제공)	-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의 이행 등) -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 금지물질 취급금지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에 대해 알아보까요?

2-1. 사업주 등은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 이행 필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원료·제조물은 「화학제품안전법」 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이 해당

구분	정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장 관련 원료·제조물
원료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	살생물물질, 제품 내 화학물질 등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장 관련 원료·제조물

원 료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
PHMG, PGH, CMIT/MIT 등



제 조 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탈취제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한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등

소독제,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항균필터, 항균 처리된 플라스틱,
방부 처리된 가구 등



●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의 정의 및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와 연관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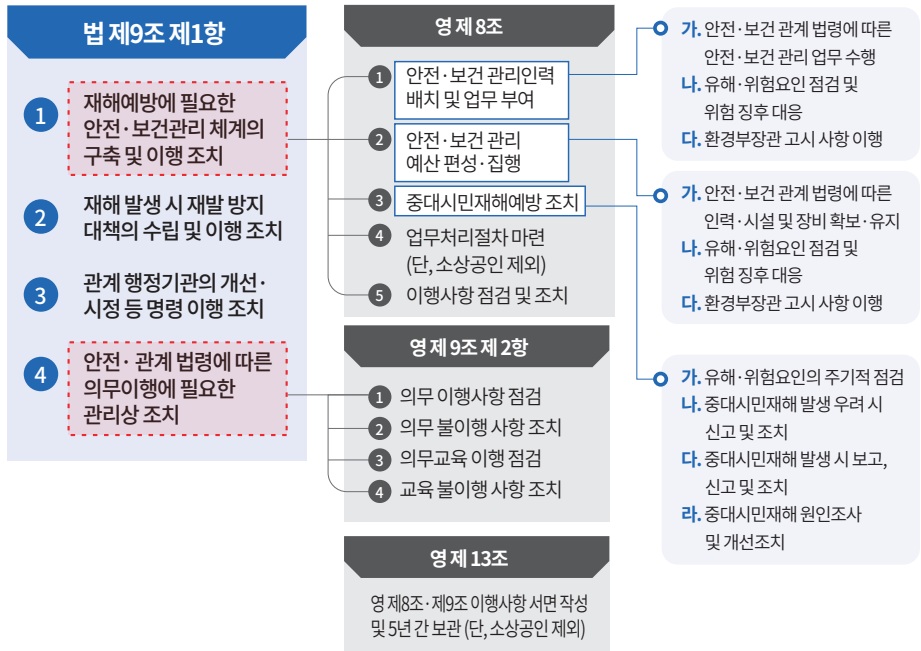
구분	정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연관된 예시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화학물질의 함유량 및 배합 비율 관리 미흡 등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의도한 설계와 다른 물질(원료) 사용, 공정상 오염 등
관리상의 결함	관리는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하는 것을 의미** → 관리상의 결함은 원료·제조물의 유지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해당 원료·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살생물제의 승인유예기간 등 관리일정 미준수 등

*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주 등은 다음의 의무사항 준수 필요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2-2-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

가 안전·보건 관리 인력 배치 및 업무 부여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주 등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갖춘 후 중대 시민재해 예방 업무 부여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①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보관·유통 시 유해·위험요인 점검업무, ②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 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④ 의무교육 이수 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주 등은 안전·보건 관리 인력 배치 및 업무 부여에 관한 사항을 받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필요

나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주 등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에 필요한 예산*

* (예시) 안전·보건 업무 수행인력의 인건비, 시설·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용 등

-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예산*

* (예시) 안전 관련 시설 기능의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등

-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유지,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유지, 의무교육 이수 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주 등은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필요

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의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주 등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치 이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외(면제)

-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 신고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시행령 제13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주 등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 위 2.2.1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2-2-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법 제9조제1항제2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주 등은 재해 발생 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대책 마련

예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을 위한 계획서 구성

① 사고 개요 ② 조사 내용 ③ 사고 원인 분석 및 결론 ④ 재발방지 대책 ⑤ 향후 조치

2-2-3. 관계 행정기관의 개선·시정 등 명령 이행 조치(법 제9조제1항제3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주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예시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사항 이행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구성

- ① 명령 사항 확인
- ② 이행조치계획서 마련
- ③ 이행조치 실시
- ④ 재발방지 대책
- ⑤ 이행조치결과 정리 및 보고

2-2-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법 제9조 제1항제4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주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및 교육 이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

점검사항	점검방법	미이행 시 필요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인력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지체 없이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영 제13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 사업주 등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 위 2.2.1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구분	사업주·경영 책임자 등 처벌	법인 또는 기관 양벌	손해배상 책임
<사망>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 원 이하의 벌금	최대 손해액의 5배
<질병>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자세히 보러가기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이 책의 저작권은 환경부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4/6828) | 제 작 : 한국생산기술연구원(041-589-8368)